

## 제23-02차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3. 02. 14(화) 10:00

2. 장 소 : 한인해 회의실

3. 참석임원: 이사 총 10명중 08명 참석  
대표이사 장영순, 상임이사 노희원, 이사 이상주, 이사 이충호  
이사 흥인식, 이사 방영순, 이사 신진상, 이사 고윤순, 감사 하상준

4. 심의안건: 의안 제1호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의안 제2호 2023년도 세입세출 제1차 추경예산안  
의안 제3호 운영수익금 사용승인안  
의안 제4호 2022학년도 인천예림학교 세입세출 제4차 추경안  
의안 제5호 2023학년도 인천예림학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안 제6호 예규세칙 개정안  
-한인해 안전보건관리규정  
-예림원·예림공동생활가정·한인해부평운영위원회운영세칙  
의안 제7호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감사 선임안

## 5. 회의내용

### 1) 성원보고

○ 장영순의장 : 재적이사 10명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2) 개회선언

○ 장영순의장 : 개회를 선언하다.

### 3) 전차이사회회의록 접수승인

○ 장영순의장 : 전차 이사회회의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접수·승인하기로 선포하다.

### 4) 감사보고

○ 장영순의장 : 2022년도 감사보고를 하상준 감사에게 요청하다.

○ 하상준감사 : 2023년2월 2일(목) 하상준, 문덕인감사가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2022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대한 감사보고를 하다.



- 장영순의장 : 감사보고에 대한 의견을 묻다.
- 흥인식이사 : 하상준, 문덕인 감사님께서 법인 및 산하시설의 운영전반에 걸쳐 철저히 감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고윤순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2022년 감사보고서를 접수하기로 하다.

## 5) 안건심의

### - 제1호 의안 : 2022년 사업실적 및 결산

- 장영순의장 : 제1호 의안 2022년 사업실적보고와 결산의건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정승윤간사 : 2022년 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을 설명하다.
- 공보연원장 : 2022년 예림일터 사업실적 및 결산을 설명하다.
- 이해정원장 : 2022년 한인해부평 사업실적 및 결산을 설명하다.
- 김덕준원장 : 2022년 한인해 사업실적 및 결산을 설명하다.
- 도경옥원장 : 2022년 예림공동생활가정 사업실적 및 결산을 설명하다.
- 손소희원장 : 2022년 예림원 사업실적 및 결산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흥인식이사 : 2022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철저히 감사하고 보고하여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충호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신진상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 - 제2호 의안 : 2023년 세입세출 제1차 추경예산안

- 장영순의장 : 제2호 의안 2023년 세입세출 제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제안설명을 요청하다.
- 정승윤간사 : 손과손 법인 당초예산 1,285,741천원에서 20,644천원이 증액된 1,306,385천원이며 그중 고용장려금 세입 284,000천원 중 산하 3개의 직업재활시설 전출금 220,000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대표이사의 관리수당과 직책수당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다.
- 공보연원장 : 예림일터 당초예산 736,195천원에서 108,203천원을 증액된 844,398천원으로 보조금 확정 및 전년도 이월금과 법인전입금 증액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다.
- 이해정원장 : 한인해부평 당초예산 2,312,137천원에서 108,823천원이 증액된 2,420,960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기능보강보조금증가분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하다.
- 도경옥원장 : 예림공동생활가정 당초예산액 439,673천원에서 29,997천원이 감액된 469,670천원임을 설명하다.



○ 손소희원장 : 예림원 당초예산 3,827,639천원에서 376,885천원이 증액된 4,204,525천원 임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추경사유는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확정에 따른 세입·세출의 조정임을 설명하고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신진상이사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 고윤순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방영순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 제3호 의안 : 2023년도 운영수익금 사용승인안

○ 장영순의장 : 제3호 2023년도 운영수익금 사용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구하다.

○ 이해정원장 : 헨인헨부평은 수익금 사용 조건인 근로장애인 임금지급요건 등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며, 2023년 전체사업예상수익금 1,400,340천원 중 이용장애인의 임금 및 훈련수당으로 984,650천원 · 자재구입 및 프로그램비로 565,000천원 사용예정이며 이 비용을 제외한 415,690천원을 인건비 124,850천원 · 관리운영비 134,440천원 · 기능보강비 156,400천원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이는 카트리지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자부담 인력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이용장애인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한 시설개보수 등에 사용예정임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이상주이사 : 원안에 동의하다.

○ 방영순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 제4호 의안 : 2022학년도 인천예림학교 세입세출 제4차 추경예산안

○ 장영순의장 : 제4호 의안 2022학년도 인천예림학교 세입세출 제4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 고은환실장 : 인천예림학교 당초예산액 6,219,690천원에서 16,867천원 증액된 6,236,55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시행할 수 없었던 현장체험학습비 22,000천원과 인건비 18,813천원 감액 등 학년말 집행 잔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2022학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은 학년도말의 집행 잔액을 조정하는 것을 설명하고 의견을 요청하다.

○ 신진상이사 : 원안에 동의하다.

○ 이충호이사 : 재청하다.

○ 고윤순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5호 의안 : 2023학년도 인천예림학교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장영순의장 : 제5호 의안 2023학년도 인천예림학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 고은환실장 : 인천예림학교 2023학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4,993,426천원 대비 59,000천원이 증액된 5,052,426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인적자원운용으로 147,669천원, 학생복지 및 교육격차해소사업비 98,547천원, 기본적교육활동사업비 87,724천원, 선택적교육활동비 38,688천원 등을 감액 편성임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홍인식이사 : 원안에 동의하다.

○ 고윤순이사 : 재청하다.

○ 이충호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5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6호 의안 : 예규세칙 개정안**

○ 장영순의장 : 제6호 의안 예규세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 이해정원장 : 시설 운영위원회 관련 운영규정의 부재로 신규제정의 시장지분이 있어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을 신규로 마련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김덕준원장 : 행인행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인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관련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안을 설명하다.

○ 도경옥원장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을 상위 지침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손소희원장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을 상위 지침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장영순의장 :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 방영순이사 : 동의하다.

○ 신진상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6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7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감사 선임안**

○ 장영순의장 : 제7호 의안 사회복지법인 감사 선임안을 상정하다

○ 장영순의장 : 법인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중 1명을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고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 전문가 감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최





초 선임시와 동일한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부평구에 추천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25일 추천을 받았고, 그에 따라 문덕인 감사의 해촉 후 재위촉을 설명하고 이사님들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상주이사 : 동의하다.
- 방영순이사 : 재청하다.
-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7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6. 폐회

- 장영순의장 : 폐회 동의와 재청 확인 후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오전 11시에 폐회를 선언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인감날인 하다.

2023. 02. 14.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장영순
		
	상임이사	노희원
	이 사	
	이 사	이상주
	이 사	
	이 사	이충호
	이 사	
	이 사	홍인준
	이 사	방영순
	이 사	
	이 사	신진상
	이 사	
	이 사	고윤순
	감 사	
		하상준
		